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청주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황정현
전화 043-299-4381

보도자료
2024. 6. 19.(수)

제
목

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지지체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
- 충청북도 공무원 7명, 청주시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-
현재까지 총 44명 기소 (구속 2명, 불구속 40명, 법인 2개)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(제11조 제2항 제1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**청주지방검찰청 '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' 수사본부**(본부장 박영빈 검사장)는 **오늘(6. 19.)** 작년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(14명 사망, 16명 상해) 관련 **청주시 공무원 3명, 충청북도 공무원 7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**하였습니다.

- **청주시 소속 공무원 3명**은 미호천의 유지, 보수를 담당하면서, ▲ 위 지하차도 인근 **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현장의 제방 안전점검**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**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**를 방치하는 한편, ▲ **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**한다는 **재난 신고를 접수**했음에도 피해상황 확인 및 **신고사실 보고·전파** 등을 **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,**

- **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7명**은 **궁평2지하차도 관리자**로서,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(水位)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, 사고 당일 06:34경 지하차도 통제 기준 수위에 도달했음에도, **지하차도 차량 진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당일 비상대응을 부실하게 수행**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검찰은 '23. 7.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즉시 수사본부를 구성 하였고, 현장조사, 기술 감정, 전문가 자문, 압수수색 및 관련자 300여 명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

- 그 결과 본건 사고가 ① 시공사의 제방 훼손 ② 공사관리 및 하천관리의 부실 ③ 재난대응 부실 ④ 지하차도 관리 부실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명확하게 규명하여, 현재까지 이에 책임이 있는 44명(법인 2개 포함)을 기소하였습니다.

※ 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등 2명 구속 기소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'건설청'), 금강유역환경청('환경청'), 충청북도, 청주시, 충청북도경찰청('충북경찰청'), 청주서부소방서 공무원 등 34명, 시공사 직원 3명, 감리단 직원 3명(총 40명)과 법인 2개(시공사, 감리업체)를 불구속 기소

① [시공사의 제방 훼손] 현장소장은 감리단장의 묵인 하에 공사 편의를 위해 위 공사 현장 내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한 후 우기에만 미봉책으로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했다 철거

② [부실한 공사·하천관리] 공사관리 책임기관인 건설청, 하천관리 책임기관인 환경청 및 청주시의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·방치하거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집중호우로 인해 사고 당일 오전 제방이 유실

③ [재난대응 부실] 청주시, 충청북도, 건설청, 환경청, 충북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은 재난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하고, 재난신고의 보고·전파를 누락하는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함

④ [지하차도 관리 부실]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들은 CCTV 모니터링, 미호천교 수위 확인을 하지 않아 본건 지하차도의 통제기준 충족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입 통제를 미이행

☞ '24. 5. 31.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7년 6월, 감리단장에 대해 징역 6년 판결 선고(1심)

- 검찰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시민재해치사)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.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※ 죄명 : 전원 업무상과실치사상

연번	소속	피고인(당시 직책)		공소사실 요지	
1	충청북도	재난안전실	가○○ (재난안전실장)	▲'23. 7. 13. 11:00경 호우주의보 발효 시 <u>상황판단회의 미개최 및 안전점검반 미편성</u> , ▲7. 15. 04:10경 홍수경보 메시지 수신하고도 <u>보고 및 전파 등 매뉴얼상 의무 불이행</u> , 재난안전대책본부('재대본') 구성 후 <u>도로과 등의 비상근무 실시 여부 미확인</u> , ▲7. 15. 06:34경 계획홍수위 돌파로 <u>본건 지하차도의 통제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통제 미실시 등 부실 대응을 하고</u> , ▲7. 15.경 접수된 <u>미호강 범람 신고 보고 및 전파를 누락</u> 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	
2			나○○ (자연재난과장)		
3			다○○ (자연재난 대책팀장)		
4		균형건설국 도로과	라○○ (도로과장)		▲'23. 7. 13. 침수사고 전까지 충청도 도로관리 및 재해대책 업무 종합계획을 <u>수립하지 않고</u> , ▲도로관리사업소에 충청도 재대본의 <u>비상근무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 으며</u> , ▲'23. 7. 15. 06:34경 본건 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<u>통제를 하지 않아</u> 사고의 원인을 제공
5			마○○ (도로시설팀장)		
6		도로관리 사업소	바○○ (도로관리 사업소장)		▲'23. 7. 13. 충청도 재대본이 가동되었음 에도 도로관리사업소 <u>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거나 발령을 건의하지 아니하고</u> ▲'23. 7. 15. 06:34경 미호천교 계획홍수위 도달로 본건 <u>지하차도</u> 통제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지하차도를 <u>통제하지 않아</u> 사고의 원인을 제공
7			사○○ (도로관리과장)		

연번	소속	피고인(당시 직책)		공소사실 요지
8	청주시	안전정책과	아○○ (안전정책과장)	'23. 7. 15. 04:10경 미호천교 홍수경보 발령, 미호천교 임시제방 터지는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미호천교 CCTV 확인, 현장 예찰 및 통제, 충북도지사에게 재난신고 통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
9			자○○ (자연재해 대비팀장)	
10		하천과	차○○ (국가하천팀장)	▲'21. 11. ~'23. 6. 제방에 대한 시설물안전 법상 정기안전점검(3회), 정밀안전점검(1회), 하천법상 점검(4회)을 부실하게 시행한 결과 시공사의 무단제방 절개 방치 ▲'23. 7. 15.경 미호천교 임시제방 범람신고를 총 4회 접수하였음에도 미호천교 제방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, 위 신고의 전파 및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 미실시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

※ 별첨 : 본건 사건 개요(별첨1), 현재까지 기소된 피고인 및 죄명(전체)(별첨2)

2

수사 및 재판 경과

- '23. 7. 15. 침수사고 발생
- '23. 7. 21. 청주지검 수사본부 구성
- '23. 7. 24.~ 8. 11. 1~2차 압수수색(충북도·청주시·충북경찰청, A○○ 등 20곳)
- '23. 9. 7.~12. 19. 3~6차 압수수색(충북도·청주시·환경청 등 8곳)
- '23. 12. 7. 시공사 현장소장 타○○, 공사팀장 파○○, 감리단장 카○○, 직원 거○○, 건설청 더○○, 러○○, 머○○ 7명 구속영장 청구
- '23. 12. 8.~12. 감리단장 카○○, 현장소장 타○○ 각각 구속
- '23. 12. 22.~28. 감리단장 카○○, 현장소장 타○○ 각각 구속기소

- '24. 2. 27. 시공사, 감리단, 건설청, 환경청 소속 16명(법인 2개) 불구속 기소
- '24. 3. 21. 前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관 14명, 前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 포함 16명 불구속 기소
- '24. 5. 31. 현장소장, 감리단장 1심 선고(쌍방 항소하여 2심 진행 중)
※ 현장소장 징역 7년 6월, 감리단장 징역 6년 선고
- '24. 6. 19. 충청북도 공무원 7명, 청주시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

3 수사인의 및 향후 계획

- 검찰은 사고 직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즉시 수사본부를 구성하여
 - ▲ 붕괴된 제방과 사고 지점인 지하차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,
 - ▲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기술적 감정을 실시하였으며, ▲ 하천 및 제방, 토목 등 사고원인과 핵심적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.
- 또한 시공사 본사 및 현장사무소, 건설청, 충북도, 청주시, 충북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6차례의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200여 대, PC 데이터 200여 건에 대한 포렌식 분석 실시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,
- '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'이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사고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- 검찰은 향후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또한 공중이용시설인 제방 및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시민재해치사)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, 유사 사례를 포함한 철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여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입니다. 

사고 개요

7. 15.(토) 08:35경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(사망 14명, 상해 16명)

기관	주요 과실	수사결과
시공 · 감리	'21. 10. 제방 무단 절개(훼손)	업무상과실치사상 등 -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2명 구속 기소, 공사팀장 등 8명 (법인 2개 포함) 불구속 기소
	'23. 7. 규정위반 불법 공작물(임시제방) 급조	
	비상근무 부실 수행	
건설청	제방훼손 목인·방치	업무상과실치사상 - 광역도로과장 등 5명 불구속 기소
	사고 징후 대처 미흡	
	비상근무 부실수행, 범람 이후 부실 대응	
환경청	제방훼손 목인·방치	업무상과실치사상 - 하천국장 등 3명 불구속 기소
	비상근무 부실 수행	
청주시	제방훼손 목인·방치	업무상과실치사상 - 안전정책과장 등 3명 불구속 기소
	재대본 상황관리 및 대응 부실	
	'23. 7. 14.~15. 사고 당일 재난신고 부실 대처	
충북 청도	지하차도 통제 미 실시	업무상과실치사상 - 재난안전실장 등 7명 불구속 기소
	재대본 상황관리 및 대응 부실	
	'23. 7. 14.~15. 사고 당일 재난신고 부실 대처	
충북 경찰청	지하차도 통제요청 신고 부실 대응 등	업무상과실치사상 등 - 112상황실 근무자 등 6명 불구속 기소, 허위공문서작성 등 - 前충북경찰청장 등 8명 불구속 기소

※ 소방공무원 2명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불구속 기소

[별첨 2]

피고인 및 죄명(총 44명)

연번	소속	피고인(당시 직책)	죄명	비고
1	감리단 [(주)B○○ 등]	카○○ (감리단장)	업무상과실치사상, 증거위조교사 등	'23. 12. 22. 구속 기소 (1심 징역 6년) 2심 재판 중
2	시공사 [A○○(주)]	타○○ (현장소장)	업무상과실치사상, 증거위조교사 등	'23. 12. 28. 구속 기소 (1심 징역 7년 6월) 2심 재판 중
3	시공사 [A○○(주)]	파○○ (공사팀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'24. 2. 27.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
4		하○○ (공무팀장)	증거위조교사, 위조증거사용교사	
5		타○○ (현장소장)	하천법위반, 건설기술진흥법위반	
6		A○○(주)	하천법위반, 건설기술진흥법위반	
7	감리단 [(주)B○○ 등]	카○○ (감리단장)	하천법위반, 증거위조교사, 위조증거사용교사	
8		거○○ (공사담당)	업무상과실치사상, 증거위조교사 등	
9		너○○ (공무담당)	증거위조교사, 위조증거사용교사 등	
10		(주)B○○	하천법위반	
11	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	더○○ (광역도로과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
12		러○○ (광역도로과 사무관)	업무상과실치사상	
13		머○○ (광역도로과 주무관)	업무상과실치사상	
14		버○○ (사업관리총괄과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
15		서○○ (사업관리총괄과 주무관)	업무상과실치사상	
16	금강유역환경청	어○○ (하천국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
17		저○○ (하천공사과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
18		처○○ (하천공사과 팀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

연번	소속	피고인(당시 직책)	죄명	비고	
19	충청북도경찰청	커○○ (충청북도경찰청장, 치안감)	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	'24. 3. 21.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	
20		터○○ (공공안전부장, 경무관)	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		
21		피○○ (경비과장, 총경)	허위공문서작성교사, 동행사교사 등		
22		허○○ (경비과, 경정)	직무유기, 허위공문서작성 등		
23		고○○ (경비과, 경감)	직무유기, 허위공문서작성 등		
24		노○○ (112상황실, 경감)	업무상과실치사상		
25		도○○ (112상황실, 경사)	업무상과실치사상		
26	청주흥덕경찰서	로○○ (청주흥덕경찰서장, 경무관)	허위공문서작성교사, 동행사교사 등		
27		모○○ (교통과장, 경정)	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		
28		보○○ (112상황실, 경위)	업무상과실치사상, 공전자기록등위작 등		
29		소○○ (112상황실, 경사)	업무상과실치사상, 공전자기록등위작 등		
30	오송파출소	오○○ (순찰팀, 경감)	업무상과실치사상		
31		조○○ (순찰팀, 경위)	업무상과실치사상		
32		초○○ (순찰팀, 경감)	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		
33	청주서부소방서	코○○ (청주서부소방서장, 소방정)	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		
34		토○○ (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, 소방령)	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		
35	충청북도	재난안전실	가○○ (재난안전실장)		'24. 6. 19.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
36			나○○ (자연재난과장)		
37			다○○ (자연재난대책팀장)		

연번	소속	피고인(당시 직책)		죄명	비고
38	충청북도	균형건설국 도로과	라○○ (도로과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'24. 6. 19.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
39			마○○ (도로시설팀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
40		도로관리 사업소	바○○ (도로관리사업소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
41			사○○ (도로관리과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
42	청주시	안전정책과	아○○ (안전정책과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
43			자○○ (자연재해대비팀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
44		하천과	차○○ (국가하천팀장)	업무상과실치사상	